## KOSHA GUIDE

C - 12 - 2012

(9) 시공자가 특별히 주의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기시방 서를 작성하거나 설계도면에 별도로 명기하여 시공자가 안전한 시공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 4.2 감독자 및 감리자의 의무

- (1)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상 현장의 지형, 지상 및 지하 장애물 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, 이상여부가 발견된 때에는 설계자에게 질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.
- (2)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 완 요청 및 시정지시를 하여야 하며,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으로 부터 안전한 시공계획서일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
- (3) 시공 중에는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확인·감독하여야 하며, 현장조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여 설계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책임 있는 기술자의 의견을 들어 안전한 방법을 선정하고 이를 지시하여야 한다.
- (4) 설계도서에서 정한 계측의 결과를 검토하여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조치방 안을 강구하고 이를 지시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자재를 반입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와의 부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하며, 검수 도중 불량 자재 및 부적격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지시하여 야 한다.
- (6)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의 안전시설의 설치,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점검하고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4.3 시공자의 의무

(1) 작업 시작 전 현장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 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감독 및 감리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대처방안을 상호 혐의하여야 한다.